[붙임2] 대출거래추가약정서(보금자리론용)

(제정 2026.4.10., 시행 2026.4.17.)

※ 은행은 채무자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이하 "기본약관")과 가계대출거래 부속약관 및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대 출 거 래 추 가 약 정 서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한 전입의무 유예 추가약정용)

주식회사 은행 앞 년 월 일

채무자는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과 약정한 년 월 일자 "대출거래약정서(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유동화목적 보금자리론용)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정서는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인 채무자**가 **다주택자**[주1]**인 매도인의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며,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일**[주2]**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무자가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 거래를 하기 위해 은행과 체결하는 추가 약정입니다.

주1) "다주택자"라 함은 매도인이 포함된 "세대"를 기준으로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 매도주택 포함 2주택이상 보유한 경우로, 매도인이 포함된 "세대"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되며,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주2)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일은 '26.4.1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을 의미하며, 아래의 갱신계약의 종료일을 포함합니다.

1) '26.4.2일 ~ '26.4.16일까지 체결되는 묵시적 갱신

2) '26.7.31일까지 종료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제2조 (구입대상 아파트)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구입하는 아파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자	주소

제3조 (전입의무)

① 대출 실행 이후 채무자는 제2조의 **구입 대상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아파트에 전입을 해야 합니다.**

② 채무자는 전항에 따라 전입을 완료한 경우, **전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즉시 은행 또는 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4조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및 약정위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 제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 그에 따라 **본 대출을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 또한 **추가약정 위반**에 따라 향후 **3년 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금지**됩니다.

1. 채무자가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입대상 아파트로 전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채 무 자 : (인)